

<p>제2021-68호 2021년 4월 12일(월)</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8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1-160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21-161호 공유수면(구거)점·사용 허가 고시 4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1-1022호 2021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 안내 5
- 여수시 공고 제2021-103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12
- 여수시 공고 제2021-1054호 도로지정공고(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468-2번지 외 1필지) 14
- 여수시 공고 제2021-1055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공고 15
- 여수시 공고 제2021-1068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6
- 여수시 공고 제2021-1079호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6

기 타

- 여수시 조례 제1585호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 여수시 조례 제1586호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6
- 여수시 조례 제1587호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 여수시 조례 제1588호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54
- 여수시 조례 제1589호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 여수시 조례 제1590호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60
- 여수시 조례 제1591호 여수시 현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64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고시 제 2021 - 160 호

공유수면(구거)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공유수면 (구거)점·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여 수 시 장

1. 허가번호: 제2021 - 18호
2. 허가일자: 2021년 4월 12일
3. 점·사용의 장소: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1409-9번지
4. 점·사용의 면적: 일시 : 6㎡
5. 점·사용의 목적: 지반조사용 시추장비 설치
6. 점·사용의 기간: 2021. 4. 15. ~ 2021. 5. 14.(30일)
7.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주)화성**엔씨

여수시 고시 제 2021 - 161 호

공유수면(구거)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하여 공유수면 (구거)점·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여 수 시 장

1. 허가번호: 제2021 - 19호
2. 허가일자: 2021년 4월 12일
3. 점·사용의 장소: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1351-10번지
4. 점·사용의 면적: 일시 : 4㎡
5. 점·사용의 목적: 농업용 창고시설 진·출입로
6. 점·사용의 기간: 2021. 4. 12. ~ 2026. 4. 11.(5년)
7.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서 * 연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 모집 공고

「전라남도 농어촌민박업 지원조례」 제6조(재정지원) 규정에 의거 농어촌민박업소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을 마련하여 방문객 편의 제공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에 참여할 농어촌민박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여 수 시 장

1. 신청기간 : '21. 4. 12. ~ 예산 소진 시 까지
2. 신청대상 :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장
3. 사업기간 : '21. 4월 ~ '21. 12월
4. 보조사업 내용
 - 소방안전시설,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등 설치비
 - 민박로고제작, 비접촉 체온계 구입비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위생장비(손소독제, 물비누 등) 구입비
 - ※업소 당 최고 700천원 지원(보조금 70%, 자부담 30%)
5. 제출서류 : 구비서류 직접 제출
 -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2, 3)
 - 청렴 이행서약서(서식 4)
 - 주민등록등(초)본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제 출 처 : 보건소(식품위생과)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7. 선정기준 고려
 -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 일치 여부
 - 행정처분 여부 :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 신청내역 현장 확인
- 소규모 사업장 등 영세 사업자 우선
- 총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높은 영업자를 우선

8. 선정결과 : 개별통지 (심사 후 7일 이내)

9. 유의사항

- 보조금은 사업(완료) 정산 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사업 선정 대상자는 소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 면허가 있는 자에게 사업을 의뢰해야하며, 정산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별도 보조사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종 선정된 업소의 사업추진은 여수시 기본 계획(일정, 예산, 방법 등)에 따라 수정·추가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10. 문 의 처 :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담당자 김홍서, ☎061-659-4278)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민박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주소				연락처	전 화) : 핸드폰) : 팩 스) :		
소 방 안 전 시 설	기본시설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시		간이 완강기	
					유도등	유도표지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 경보기	자동확산 소화기	안전진단			
확 대 사 업	민박로고 제작	비접촉 체온계	코로나19 위생장비	손소독제	물비누	기타		
사 업 예 산	신청비용 (천원)	합계	보 조			자부담		
			(소계)	도비	시군비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사업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사업계획 요약서

◆ 전체 사업계획을 한장에 요약

업 소 현 황	업 소 명					
	상근직원수 (명)			금년도 총예산 (단위:천원)		
사 업 개 요	사 업 명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기간		
	사업목적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소방안전시설 정비				
	사 업 비 (단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사업대상					
	사업효과					
사 업 내 용 (체크 “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신규 설치 및 보강 ○ (전기·가스)안전진단 ○ 확대사업 참여 : 농어촌민박 로고 제작 / 비접촉 체온계 구입 ○ 코로나19 방역 위생장비 구입 : 손소독제, 물비누, 소독티슈 등 					
사 업 비 산출내역	○					
최근 공익활동 추진실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을 기재 (신규 보조금 신청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보도자료, 사진, 회의록 등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전년도 보조사업 실 적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자 부 담	천원
	사업효과					

사업계획서

사업개요(총괄)

※ 반드시 1매(Page)로 작성

보조 종류 1) : 민간자본사업보조

업 소 명								
사 업 명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 요 내 용					
	소방안전시설 설치	○ 소화기		개	○ 간이완강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일산화탄소경보기		개	
		○ 휴대용비상조명등		개	○ 가스누설경보기		개	
		○ 피난유도등		개	○ 자동확산소화기		개	
		○ 피난유표지		개	○		개	
	안전진단비							
	확대 사업		○ 민박로고제작		개	○ 비접촉 체온계		개
코로나19 위생장비		○		개	○		개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회비(자담)		천원
			신청금액			기부금(후원금)		
신청금액 (보조금)의 세부내역2)	사업비	천원	○ 소방안전시설비		:	천원		
			○ 안전진단비		:	천원		
			○ 확대사업 참여		:	천원		
			○ 코로나19 위생장비		:	천원		

사업비 집행계획3)

(단위:천원)

단 위	재원	지출	지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	----	----	------	----	------

- 1) 지방보조금 과목 7개 중 해당되는 과목 기재(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운수업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2)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 생략 가능
- 3)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신청 시에는 총사업비에 대한 개략적인 산출 기초 작성

사업명		비목			
합계					
농어촌 민박 소방안 전시설 지원	자부담	계			
		물품비	소방안전시설 물품 구입		○ 세부 견적서 첨부
			확대사업 물품 구입		○ 세부 견적서 첨부
			코로나19 방역 위생장비 구입		○ 세부 견적서 첨부
	진단비	안전진단비		○ 세부 견적서 첨부	
	보조금	계			
		물품비	소방안전시설 물품 구입		○ 세부 견적서 첨부
			확대사업 물품 구입		○ 세부 견적서 첨부
			코로나19 방역 위생장비 구입		○ 세부 견적서 첨부
	진단비	안전진단비		○ 세부 견적서 첨부	

〈작성요령〉

- ① 세부사업명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 ② 지출비목 : 강사료, 홍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활동비 등 주요 예산비목 중에서 선택
 - ③ 지출내역 : 구체적인 지출 내역 기재
 - ④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 ⑤ 산출내역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 ※ 동일 세목 내에서 보조금 및 자부담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구분 편성 지양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명 :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 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제29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1. . .

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사항을 우편 통지하여야 하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여 수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3. 공고기간 : 2021. 4. 12. ~ 2021. 4. 30.
4. 대상업소 및 공시송달 내역

업종	업소명	대표자	업소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결과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싱싱나라	김*부	여수시 동문로 103(공화동)	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2021.3.15)
"	부영정육점	이*엽	여수시 여문1로 90-1, 상가동 16호(문수동)	"	"
"	옛날손맛반찬점	박*민	여수시 대학로 43(미평동)	"	"
"	비비Q	강*미	여수시 좌수영로 682-27, 상 가동 101호(봉계동)	"	영업소폐쇄 (2021.3.18.)
"	금호회관	김*자	여수시 중흥동 61-10	"	"
"	우정식당앞	김*완	여수시 공화북8길 2(공화동)	"	영업소폐쇄 (2021.4.9)
"	행운당도장방	김*수	여수시 동문로 129-2 (공화동)	"	"
"	서울돼지국밥	이*향	여수시 오림1길 9-4 (오림동)	"	"
"	낙시공간	오*교	여수시남산동316	"	"

업종	업소명	대표자	업소 소재지	처분의 원인	처분결과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미평제화	조*헌	여수시 미평로 53 (미평동)	영업장 시설물 전부철거	영업소폐쇄 (2021.4.9)
"	새천년슈퍼	임*숙	여수시 거북선공원길 6 (학동)	"	"
"	합동상회	주*욱	여수시 대통3길 80 (화장동)	"	"
"	늘푸른식품	이*재	여수시 흥국사길 14, 4호 (중흥동)	"	"
"	성산교회앞	이*순	여수시 율촌면 산돌길 148	"	"

5. 고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온라인(<http://www.simpan.go.kr>)으로 처분청 또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여수시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 061)659-4232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468-2번지 외 1필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제 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411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	486-2	64	10	308		
	468-5	21	10	103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4. 12.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공고

국세청으로부터 폐업사실이 통보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 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2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여 수 시 장

1. 등록말소 대상 업체 현황

상 호 (대표자)	소재지	해당업종 (등록번호)	처분사유	처분내역 (말소일자)	행정처분근거	처분일자
코리아에스에이치 아이(주) (박*심)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13-36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여수2015-07-02)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등록말소 (2021. 4. 1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	2021.4.12.

2. 공고 기간: 2021. 04. 12. ~ 4. 26.(15일간)

3. 공고 장소: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근 상급기관 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행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범위 등 개정사항을 반영
- 근거 법령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4항 개정사항 반영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공동명의자 확대 반영 (안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 기존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추가 :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외국인등록을 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장애인과 그 가족 등으로 확대
 - 대체취득에 대한 자동차 감면요건 1년 이상 경과규정 삭제 (안 제2조제4항)
- 관련법 변경에 따른 근거 조항 정비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제8조제5항 “을 ” 제8조6항” 으로 변경 (안 제2조제5항)

-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를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로 변경 (안 제5조제1항제3호)

○ 상위법의 경감률 직접 명시에 따른 조문 삭제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2021년부터 경감률 직접 명시

○ 감면사항 일몰제 적용기한 연장(2023년 12월31일까지)

-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3. 입법 예고기간 : 2021.4. 12. ~ 5. 3.(21일간)

4.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여수시 세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세정과

○ E-Mail : junho9574@korea.kr

○ 전 화 : 061-659-3527

○ F A X : 061-659-581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반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을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하 “가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장애인 및 가족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7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및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가족”은 「주민등록법」의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하여 확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배우자 2. 장애인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 3. 장애인의 직계비속(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4. 장애인의 형제자매 5.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p>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가족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주민등록표를 같음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 삭제 ></p>

현행	개정안
<p><u>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u></p> <p>⑤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p> <p><u>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u></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p>	<p>⑤ ----- ----- ----- -----<u>제8조제6항</u>----- ----- ----- -----.</p> <p><삭 제></p> <p>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 ----- -----</p>

현행	개정안
<p>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u>2017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 -----<u>2023</u> <u>년 12월 31일</u>----- ----- ----- ----- -----.</p>
<p>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는 <u>2018년 12월 31일까지</u>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p>	<p>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 ----- ----- ----- <u>2023년 12월 31일</u>----- ----- -----.</p>

공 고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4. 12.

여 수 시 장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례 개정으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확대 운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정비

2. 주요내용

- 안 제2조(대상마을 선정 및 방법)
 - “별표 1”의 대상마을 삭제(대상마을은 시장이 지정함)
 - ⇒ 도로개설, 택지조성 등 여건 변화 시 대상마을 추가·해제 절차 간소화

3. 개정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21. 4. 12. ~ 2021. 5. 2.(20일간)

5. 의견 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교통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61-659-4123) 또는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가.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나. 받는 사람 : 여수시장(교통과장)
- 다. 전화번호 : 061)659-4123, 팩스 061)659-5809
- 라. 이 메 일 : lsw4427@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의 대상마을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대상마을 선정 및 방법) ① <u>「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u> (이하 “조례” 라 한다)제2조 제2호의 100원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하 “대상마을” 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p> <p>② <u>대상마을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정한다.</u></p>	<p>제2조(대상마을 선정 및 방법) <u>「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u> (이하 “조례” 라 한다)제2조 제2호의 대상마을은 읍·면·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정한 다.</p>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 월 12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585호

붙임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수시”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수시”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수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여수시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을 “제3항에 따른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사람이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여수시 체육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체육계 원로

나. 대학의 체육담당 교수나 중학교 · 고등학교 체육 주임교사

다. 체육 단체 및 체육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라.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마. 사회단체나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여수시의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국민체육진흥법</u>」에서 위임된 사항과 <u>여수시</u>----- ----- ----- -----.</p>
<p>제5조(설치) 「<u>국민체육진흥법</u>」 제5조에 따라 <u>여수시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u></p>	<p><삭 제></p>
<p>제6조(기능) <u>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u></p>	<p>제6조(기능) 「<u>국민체육진흥법</u>」 제5조제1항에 따른 <u>여수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여수시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u></p>
<p>1. <u>체육 진흥 계획 수립</u></p> <p>2. (생략)</p> <p>3. <u>기타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p>	<p><삭 제></p> <p>1. (현행 제2호와 같음)</p> <p>2. <u>그 밖에</u> -----</p>
<p>제7조(구성) ① <u>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② <u>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제7조(구성) ① ----- ----- <u>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u> ----- -----.</p> <p>② ----- -- <u>제3항에 따른 위원</u> -----</p>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체육계 원로

2. 대학의 체육담당 교수나 중학교·고등학교 체육 주임교사

3. 체육 단체 및 체육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4.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사회단체·직능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

③ ----- 사람이 된다.

1. 여수시 체육회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체육계 원로

나. 대학의 체육담당 교수나 중학교·고등학교 체육 주임교사

다. 체육 단체 및 체육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라.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마. 사회단체나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삭 제>

<삭 제>

<삭 제>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 월 12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586호

붙임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난방 연료비
3. 경로당 양곡구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정산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반기별로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하거나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한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2021년 4 월 12 일

여 수 시 장 권 2봉



여수시 조례 제1587호

붙임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도시림 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시에서 관할하는 도시림, 생활림”을 “여수시에서 관할하는 도시숲, 생활숲”으로,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4조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제1항 중 “도시림등의 경관향상”을 “도시숲등의 경관향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으로 한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이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混植)한다.”를 “(混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성한다.”를 “조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혼식한다.”를 “혼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도폭”을 “보도 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계획지(이하 “조성지등”이라 한다)”를 “계획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성지등”을 “조성지 또는 계획지”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밖에 도시림”을 “밖의 도시숲”으로, “절·성토”를 “절토·성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보호틀등”을 “보호틀 등”으로, “보도폭”을 “보도 폭”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실시한다.”를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실시할 수 있으며,”를 “실시.”로 한다.

1.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에 병충해 방제작업 계획 고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바뀌심기 등”을 “바뀌심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바뀌심기 등”을 “바뀌심기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식재, 메워심기, 바뀌심기 등”을 “식재 또는 바뀌심기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가능장소”를 “가능장소”로 한다.

제3장 “도시림등의 협의 및 승인”을 “도시숲등의 협의 및 승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6호 중 “밖에”를 “밖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기타 도시림등”을 “그 밖의 도시숲등”으로, “관리에 관한

내용”을 “관리”로 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2천만 원”을 “2천만원”으로,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림 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4장 “여수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여수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을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을 “밖의 시장이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도시림등 관리부서의 국장”을 “도시숲등 관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의회”를 “여수시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림등 업무관련”을 “도시숲등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도시림등 업무담당자를”을 “도시숲등 업무담당 팀장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림등”을 각각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도시림등”을 “그 밖의 도시숲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가로수등”을 각각 “가로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지급하거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원 등을”을 “지급”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수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여수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는 제18조 개정규정에 따른 여수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여수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수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림”이란 시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목적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단,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2.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경관숲”이란 우수한 산림의 	<p style="text-align: center;"><u>여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도시숲등----- -----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4.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생활·교통 환경개선 및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목적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시에서 관할하는 도시림, 생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녹화 및 도시림등의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① 시장은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분석한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계획(이하 “조성·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마다 수립

제3조(적용) ----- 여수시에서 관할하는 도시숲, 생활숲 ----- “도시숲등”-----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도시숲등의 경관 향상----- 도시숲등 -----
-----.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삭 제>

·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관리계획의 성과(成果) 및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조성 장소) ① 시장은 시민의 접근성이 좋고,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도시림등을 조성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그 밖에 경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가로수의 조성·관리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 중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소로 한다.

1. · 2. (생략)
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리도

4.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하는 경우 주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방법) ① 도시림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 장소) ① -----

----- 도시림-----.

1. · 2. (현행과 같음)
3. -- 밖의 -----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이도

4. (현행과 같음)

③ ----- 도시림-----

-----.

제7조(조성방법) ① 도시림-----

-----.

1. 수목은 가급적 향토수종을 식재 하되, 조경수로서 가치가 높은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히 혼식(混植)한다.

2.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자연에 가까운 수목형이나 산림형으로 조성한다.

3.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계절 및 경관을 고려하여 관목과 초화류를 적절히 혼식한다.

② 가로수는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하며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 지역건에 따라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지형·토양의 보호) ① 도시림의 조성지 또는 계획지(이하 “조성지등”이라 한다)의 토양에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조성지등에서는 지형을 변경하는 절·성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1. -----

-----(混植)

2. -----

조성

3. -----

- 혼식

② ----- 보도 폭 -----

----- . 다만, -----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지형·토양의 보호) ① 도시숲 -----
----- 계획지 -----

----- .

② ----- 조성지 또는 계획지 -----
----- 안 -----
된다. -----
----- 그렇지 않 -----
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시림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③ 도시림등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踏壓) 또는 오염 등으로 척박화 되어 수목의 생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토 또는 시비(施肥)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9조(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 ① 가로수 보호틀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2에 따라 도로 노선별로 보도폭을 기준으로 설치·관리한다.

②·③ (생략)

제10조(병충해 방제) 병충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병충해 방제작업 전에 그 계획을 고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수목에 대하여는 가지치기, 바퀴심기, 메워심기 등 임업적 방제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3. 제2호에 따른 임업적 방제로는 병충해 방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여 생태계 교

4. -- 밖의 도시숲-----
-----절토·성토

③ 도시숲등 -----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 ① -----
----- 보호틀 등 -----
----- 보도
폭-----.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병충해 방제) -----
----- 다음 -----

-----.

1.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전에 병충해 방제작업 계획 고지

2. -----

----- 실시

3. -----

----- 실시. -----

란 및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수목의 교체) ① 도시림등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목이 있는 경우 이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이하 “바꿔심기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교체한다.

1. ~ 4. (생략)
5. 기타 시장이 바꿔심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② 제1항에 따른 바꿔심기 등은 현지를 조사하여 적기에 실시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한 후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실시한다.

제13조(가로수 점검) ① 시장은 매년 11월에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 발생 등으로 시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거나 식재, 메워심기, 바꿔심기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수목의 신규식재 가능장소 확인 등

제3장 도시림등의 협의 및 승인

-----.

제11조(수목의 교체) ① 도시숲등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바꿔심기등-----

② ----- 바꿔심기등-----

-----.

제13조(가로수 점검) ① -----

----- 식재 또는 바꿔심기등의 -----

-----.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가능장소-----

제3장 도시숲등의 협의 및 승인

제14조(협의를 등) ① (생략)

② 가로수관리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관련 법령, 조성·관리 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등

제15조(승인신청)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 3. (생략)
4. 기타 도시림등 조성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내용

②·③ (생략)

제16조(비용부담) ①·② (생략)

③ 도로의 점·사용 허가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가로수 관련 시설 등을 이설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가로수의 규격이 근원경 20cm 또는 흉고직경 18cm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로수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2천만 원 이하 공사는 조경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시림등 조성으로 등록된 여수시 관내 업체를 선

제14조(협의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5. (현행과 같음)
6. -- 밖의 -----

제15조(승인신청)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도시숲등 ----- 관
리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비용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2천만
원 -----
----- 도시숲등 -----

정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조경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도시림등 조성으로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림 등 관리시설물이 자동차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여수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18조(설치)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2. (생략)
-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도시림등 관리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2천만원-----
----- 도시숲등-----

④ ----- 도시숲등 -----

제4장 여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18조(설치) 시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 1.·2. (현행과 같음)
- 3. -- 밖의 시장이 도시숲등-----

제1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시숲등 관리 업무 담당국장-----

③ -----

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림등 관련 전문가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생략)
4. 도시림등 업무관련 부서의 장

제22조(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림등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제25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도시림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

1. 도시림등 병충해 발생신고
2. 도시림등에 재해발생 시 필요한 협조
- 3.·4. (생략)
5. 기타 도시림등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등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등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 3.·4. (생략)

③ 시장은 시민이 도시림등의 유지

-----.

1. 도시숲등 -----
2. 여수시의회-----
3. (현행과 같음)
4. 도시숲등 업무 담당 -----

제22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도시숲등 업무담당 팀장 ----
-----.

제25조(시민참여) ① -----

----- 도시숲등 -----
-----.

1. 도시숲등 -----
2. 도시숲등-----
-
- 3.·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도시숲등 -----

② -----
-----.

1. 가로수 등-----
2. 가로수 등-----

- 3.·4. (현행과 같음)

③ ----- 도시숲등-----

• 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물품 및 장비를 지급하거나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급 -----

-----.

<삭 제>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모범
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 월 12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588호

붙임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서 정한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여수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전남지부 여수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감독)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8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 월 12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589호

붙임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을 ““대상마을”이란”으로, “1km이상”을 “500m 이상”으로, “지역”을 “마을”로, “지정”을 “100원 택시 운행 대상으로 지정”으로 한다.

제5조 중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사무소 및”을 “대상마을에서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읍·면 출장소를 포함한다)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 이라 한다)”</u>이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u>1km이상</u> 떨어진 마을 또는 도보로 20~30분이 소요되는 <u>지역</u> 중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u>지정한</u> 마을을 말한다.</p> <p>3. ~ 5. (생략)</p> <p>제5조(운행구간) 100원 택시의 운행구간은 <u>대상마을에서</u>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 또는 인근 농어촌 버스승강장까지로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대상마을” 이란</u> ----- ----- ----- ----- <u>500m 이상</u> ----- ----- <u>마을</u> ----- ----- ----- <u>100원 택시 운행 대상</u> <u>으로 지정</u>-----.</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운행구간) ----- ----- <u>대상마을에서부터</u> 해당 <u>읍·면사무소(읍·면 출장소를</u> <u>포함한다)나</u> ----- -----.</p>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 월 12 일

여 수 시 장 권 오 봉



여수시 조례 제1590호

붙임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청소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 등의 권리) 경비원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등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경비원 등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경비원 등 또는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경비원 등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2. 경비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사업
3. 그 밖에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과약 등) ① 시장은 경비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과약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과약 결과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직무와 인권보호 교육) ① 시장은 경비원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

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4 월 12 일

여 수 시 장 권 오봉 

여수시 조례 제1591호

붙임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의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인체조직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여수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 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헌혈,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제
4. 그 밖에 헌혈,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부서 및 읍·면·동에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업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여객선터미널 등 홍보매체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연도의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기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 2.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
- 3. 장기기증사망자에게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 감면
- 4.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반이용료 경감
 -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여수시민에게 제3조제4호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을 기증한 자로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대상 중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감 면 비 율 (%)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	치과부분		주간보 호시설 입소료	재증명	수질검사
	치석제거	복합레진			
100	-	-	-	100	

②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8호 중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8.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차량 : 주차 요금의 50퍼센트

③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 중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4.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제34조 제1항 중 제4호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4.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④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일반(연습)이용료 감면기준 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